

소통하는 의정
공감받는 의회

제369회 정례회
'18. 11. 23.(금)

전문위원 검토보고서

충청북도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

정책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심기보 의원 등 7명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- 발의일자 : 2018년 10월 31일
- 회부일자 : 2018년 11월 05일

3. 제안사유

- 상위법령인 「식품위생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기금의 용도 및 회계 관계공무원 관직 명칭을 변경하고,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원장 및 위원 구성에 대한 내용을 개정하는 등 현행조례의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4. 주요내용

- 가. 상위법령에 따라 기금의 용도를 확대함. (안 제4조)
 -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 지정 사업 지원 등
- 나. 기금 관리·운용을 위한 회계 관계공무원 관직 명칭을 「식품위생법 시행령」 제62조에 따라 개정함 (안 제5조)
 - 기금운용관 → 기금수입징수관
 - 분임 기금운용관 → 분임기금재무관,
 - 기금출납원 → 기금출납공무원
- 다.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구성 변경 (안 제6조)
 - 위원장 : 행정부지사 → 기금 업무담당 국장
 - 위원에 충청북도의회 의원, 금융·예산·회계분야 전문가 또는 관련기관 대표자 포함.

5. 검토의견 (수석전문위원 최영지)

가. 제출배경

- 본 조례안은 식품위생 및 도민영양수준 향상을 위해 1989년 1월 설치된 식품진흥기금의 운용을 담당하는 회계 관계 공무원의 관직 용어를 「식품위생법 시행령」에 따라 변경하고,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위원장 및 위원 구성에 대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내용 검토

- 안 제4조는 기금의 용도에 ‘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 지정 사업 지원’ 과 ‘「공익신고자 보호법」 제29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보상금(이 법 및 「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」 위반행위에 관한 신고를 원인으로 한 보상금에 한정한다) 상환액의 지원’ 을 추가하고, 기존 위생관리시설 등 개선을 위한 용자사업을 지원하는 영업자 범위에 ‘「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영업자’ 를 포함한 것으로,
 - 이는 상위법인 「식품위생법」 제89조제3항의 개정에 따른 것임.
- 안 제5조는 기금 관리·운용을 위한 회계 관계공무원 관직 명칭을 「식품위생법 시행령」 제62조에 따라 개정한 것이며, 특히 기금업무 담당과장을 분임기금재무관으로 임명하여, 기금재무관(담당 국장)의 역할을 분담토록 하였음.

※ 식품위생법 시행령

제62조(기금의 운용) ④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 수입정수관, 기금재무관,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.

- 안 제6조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기존 행정부지사에서 기금업무 담당 국장으로 변경하고, 위촉직 위원에 충청북도의회 의원, 금융·예산·회계분야 전문가 또는 관련기관 대표자 포함하였음.
- 위원장을 기금업무 담당 국장으로 변경한 것은,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도모를 위한 것으로 판단되며,
- 현재 충북을 제외한 전국 16개 광역시·도 중 12개 시·도가 위원장을 업무담당 국장이 맡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, 충청북도도 위원장을 기금재무관인 담당 국장으로 변경하는 것은 업무 수행 상 무리가 없다고 사료됨.
 - ※ 17개 광역시·도의 식품진흥기금 위원회 위원장 현황
 - 업무담당 국장이 담당(12) : 서울, 부산, 대구, 인천, 광주, 울산, 세종, 강원, 충남, 전남, 경북, 제주
 - 부지사가 담당(2) : 경기, 전북
 - 통합관리기금심의위에서 담당(2) : 대전, 경남
- 또한, 위촉직 위원에 ‘충청북도의회 의원’ 과 ‘금융·예산·회계분야 전문가 또는 관련 기관의 대표자’ 를 포함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됨.

다. 종합의견

-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「식품위생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, 기금의 용도를 확대하고, 회계 관계 공무원의 관직명 변경하였으며,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원장 및 위원 구성에 대한 내용을 개정한 것은 내용 및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며, 입법예고와 해당 집행부와의 협의를 거친 바 절차상으로도 문제가 없음.